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29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황명선・이정문・윤준병

정동영 · 송재봉 · 장철민

정태호 • 박희승 • 김태년

민병덕 · 김우영 · 김현정

정진욱 · 김영환 · 염태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는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적절하지 못하 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집행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따라 퇴임하거나 「형법」상 내란・외

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 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제2조에 따른 국가장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제2조에 따른 국가장의 대상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u>경우</u>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
	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
	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
	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